

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-114호

2026년 「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」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. 2. 11

산업통상부 장관

I 사업개요

가. 사업목적

-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교체 또는 서비스 보급을 지원

나. 지원기간: 2026년 11월 내 사업 추진 완료

다. 지원대상: 수요기업(산업단지 내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, 전문기업 또는 관리조직)

라. 지원규모: 총 2,800백만원 이내 (보조율 60%)

II 사업내용

가. 지원대상

-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복수의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설비 또는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·중견기업

나. 대상설비: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설비 예시(별표1 참조)

<2026년 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 지원 세부사업 필수요건>

-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**복수의 수요기업**을 포함한 수행기관 단, 수행기관 내 관계사(계열사,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기업 등)일 경우 개수에서 제외함
- 수행기관은 전문기업, 수요기업 또는 관리조직이 가능
 - * IV. 신청자격 참조
 - ** 전문기업이 주관 할 경우 3개사(주관사 포함) 이상의 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요
 - *** 수행기관 내 A기업[법인] + B기업[법인] (계열사인 경우) → 1개 기업으로 인정
- 수요기업은 **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**이어야 하며, 세부관리 지침 제3조(사업대상)에 명시한 **'산업단지'에 입주해 있으면서 공장등록을 완료**해야 지원 가능 (공장등록증명원 제출 必)
- 산업단지 내 **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교체하거나 설치하는 설비 및 서비스**
- **국고보조금 60% 이하 (지방비 또는 민간부담금(현금) 40% 이상 매칭 필수)**
 - * 자부담금은 수행기관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부담 가능함.

다. 지원조건

- 2026년 11월 내 설비 구축 완료(必)
- 공동활용 온실가스 감축설비 또는 서비스 도입 및 교체를 위한 **총사업비의 60% 이내 지원**
- 지원한도는 신청 세부사업별 **최대 10억원** 지원
-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(보조사업 관련 계약)에 의거 2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계약 체결시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하여야 함.

라. 지원내용

- 설비 구입비(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)
 - * 계약별 견적은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제출 (조달입찰이나 나라장터 이용시 제외)
- 설치·시운전비(공사비, 시운전비)

- 기술 성능 및 성과 검증을 위한 검증 분석비
- 회계위탁정산비
-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[별표1]에 따른 보조비목 및 세목 중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비

III 추진체계

가. 추진체계



나. 추진체계별 역할

구 분	구성 및 역할
산업통상부 (총괄기관)	○ 정책수립, 사업계획 등 총괄
한국산업단지공단 (전담기관)	○ 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총괄 ○ 지원사업 공모, 세부사업 수행기관 선정, 현장점검, 최종평가, 온실가스 감축량 관리 등
한국산업단지공단 (온실가스 감축량 검증)	○ 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사업 성과관리 -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, 검증, 외부사업등록(상쇄등록부) 및 관리 등을 산단공 주도*하에 관리 *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전문기관에 용역 예정
수행기관 (수요기업, 전문기업 또는 관리조직)	○ 온실가스 감축설비·서비스 설치 및 관리 * 설비·서비스 설치계획서만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관리는 산단공 지정 전문용역사가 대행할 예정임. **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시 조달청·지자체 의뢰 (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의거)

IV 신청자격

가. 신청대상

- 기업 주관: 전문기업* 또는 수요기업**이 주관하여 적용기업(2개사 이상)을 참여로 하는 컨소시엄 구성 필수

* 전문기업이 주관 할 경우 3개사(주관사 포함) 이상의 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

** 수요기업(공장등록증 소유기업)이 주관 할 경우 2개사(주관사 포함) 이상의 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

- 관리조직 주관: 조합·기업협의체 등의 관리조직은 자체 조직을 컨소시엄으로 간주하여 단독 주관으로 신청 가능*

* 관리조직은 단독 주관이 가능하나, 조직 내 정해진 의결 절차를 수행하여 참여 의사 동의는 별도로 확보해야 함

구분	참 여 기 준
전문기업	○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, 기술력을 보유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기업
수요기업	○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 내 공장 등록된 중소·중견기업으로 온실가스·에너지 감축설비 설치 및 서비스를 지원받는 기업
관리조직	○ 중소기업기본법,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단체 및 사단법인 등 수혜 기업을 모집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원하는 산단 내 기업협의체 ○ 협동조합기본법,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업단지 내 공동이용설비, 공동폐수처리장 관리 등을 위해 설립한 조합 등의 관리조직

나. 지원규모 및 조건

수행기관	참여기관	국비 지원한도 및 비율	지원기간
전문기업, 수요기업 또는 관리조직	수요기업, 관리조직	최대 10억원 / 60%	~ '26년 11월 내외

다. 제출서류

번호	서 류 명	원본	제 출	비 고
1	사업계획(신청)서 참여의사확인서	원본	1부	파일제출 포함/ 별지 서식 제1호 별지 서식 제3호
2	사업자등록증명원	사본	각1부	주관기관, 참여기관 모두 제출
3	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	원본	각1부	주관기관, 참여기관 모두 제출
4	신용평가등급확인서	원본	각1부	주관기관, 참여기관 모두 제출
5	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	원본	각1부	주관기관, 참여기관 모두 제출
6	중소, 중견기업확인서	원본	각1부	중소기업청, 중견기업정보마당 발급
7	공장등록증명서	원본	각1부	적용기업 모두 제출

* 사업 신청할 때 사본 제출하고 추후 별도 요청시, 원본 제출

가. 사전검토

○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을 검토

- 수요기업이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된 기업 여부 확인

※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방법

- ◇ 팩토리온(<https://www.factoryon.go.kr>) 회원가입
- ◇ 로그인 후 상단메뉴의 '온라인 민원' - '증명서 발급' 클릭
- ◇ '공장검색' 클릭 후 입주기업체 정보 입력
- ◇ 증명 구분에서 공장등록증명서 선택 후 신청, 발급
- * 산단에 입주에 있으나 검색이 안될 경우 공장미등록 기업
- ** 이 외 지자체, 산단공 지역본부 등 관할산단 관리기관에서 발급 가능

- 사업과의 부합성, 기개발/기지원, 의무사항 불이행, 참여제한,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

-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※ 지원제외 대상

- ◇ 기업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중인 기업
- 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
- 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, 휴·폐업중인 기업
- ◇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
- ◇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
- ◇ 최근 2개 회계연도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
- 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
- ◇ 기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○ 설비·서비스 교체 또는 설치시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검토

- 전문용역사를 통한 선정평가용 사업계획서상 설비들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

- * 전문용역사에서 요청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보완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.

나. 선정기준

-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 우선순위 선정(고득점순 / 70점 이상)

평 가 항 목		평 가 내 용	배점
사업 계획	○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	· 추진방법·일정의 구체성 · 설비 적정성, 적용의 타당성	5
	○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	· 목표 설정의 적정성, 달성 가능성 · 목표 달성 정도 측정의 명확성 · 사업 목적의 적합성	15
	○ 사업비 적정성	· 사업비 산정·구성의 적정성 · 설비 비용의 적정성	10
수행 능력	○ 사업의 전문성 및 구성의 적정성	· 전문기업의 구성 · 전문성 및 보유기술력 ·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등	10
사업 효과	○ 산출근거의 타당성	· 온실가스 감축, 에너지 절감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	10
	○ 온실가스 감축효과	·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량 · 외부사업 등록 계획	30
	○ 고용창출 효과	·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	5
	○ 사업효과 파급성	· 다수 기업 참여 및 동일 업종· 타업종으로 확대 적용 가능성	15
가점	○ 가점 부여	· 적용기업 4개사 이상	5
		· 생태산업단지 입주 기업	2

* (평가기준의 변경) 세부사업별 선정기준은 공고문에서 변경될 수 있음.

** (평가점수)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

*** (가점부여) ① 수요기업이 4개사 이상의 경우 5점 가점 부여

② 공동활용설비나 서비스가 설치운영되는 지역이 생태산업단지인 경우 2점 가점 부여

○ (참고) 전국 생태산업단지 리스트(105개)

순번	시·도	대상단지	단지수
1	경기	반월국가, 시화국가, 아산국가포승지구, 평택송탄일반, 양주검준일반, 안성1·2·3일반, 포천양문일반, 동두천1일반, 반월도금일반	11
2	충북	오창과학, 청주일반, 광혜원일반, 증평일반, 금왕일반, 충주일반, 충주첨단, 제천일반, 오송생명과학, 옥산일반	10
3	충남	아산(고대, 부곡)국가, 현대제철일반, 대산일반, 서산오토밸리, 탕정디스플레이시티, 인주일반, 천안제2·3일반, 백석농공, 아산테크노밸리, 서산테크노밸리	11
4	경북	포항철강, 구미국가, 다산일반, 외동일반, 왜관일반, 포항국가, 두류일반, 학상일반, 천북일반	9
5	대구	성서1·2·3·4일반, 달성1·2일반, 염색일반, 서대구일반, 검단일반, 제3공업, 성서5일반, 구지농공	12
6	울산	울산미포국가, 온산국가, 매곡1일반, 길천일반, 신일반, 하이테크밸리일반, 모듈화일반, 달천농공, 상북농공, 두서농공	10
7	부산	명지녹산국가, 신호일반, 신평장림일반, 부산과학일반, 정관일반, 장안일반, 화전일반	7
8	전북	군산국가, 군산2국가, 익산국가, 익산2일반, 완주일반, 정읍1·2·3일반, 전주1·2일반, 군산일반, 정읍첨단과학	12
9	전남	여수국가, 광양국가, 대불국가, 화양농공, 오천일반, 동강농공, 풍양농공, 초남·익신일반, 신금일반	9
10	인천	남동국가, 한국수출산업국가, 검단일반, 인천일반, 인천기계일반, 인천서부일반	6
11	광주	광주첨단과학국가, 하남일반, 본촌일반, 소촌일반, 평동일반	5
12	대전	대덕연구개발특구Ⅱ지구(대덕테크노밸리), 대덕연구개발특구Ⅲ지구(대덕산업단지), 대전일반	3
합 계		105개	

VI

추진일정

추진절차	추진기관	일정	세부내용
① 모집공고	산업통상부, 한국산업단지공단	'26.2~3월	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
② 사업계획서 신청·접수	신청업체→ 한국산업단지공단	'26.2~3월	사업계획서 신청·접수 (e나라도움 서류 접수) * e나라도움 접수 후 산단공 담당자 메일로도 제출 必
③ 사업계획서 사전검토	한국산업단지공단, 전문용역사	'26.4월	사전검토(공단),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검증 계획서 작성 (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전문용역사)
↓			
④ (필요시) 현장실사	한국산업단지공단	'26.4월	새로운 과제형태로 현장실사 필요시에만 실시
↓			
⑤ 선정평가	한국산업단지공단	'26.4월	사전검토(공단) 평가·선정(외부전문가,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용역사)
↓			
⑥ 선정 (세부사업별 협약)	선정 수행기관↔ 한국산업단지공단	'26.4월	협약체결 (선정통보 후 15일 이내)
↓			
⑦ 착수신고	수행기관→ 한국산업단지공단	'26.5월	협약체결 후 10일 이내
↓			
⑧ 보조금(선금) 신청·지급	수행기관↔ 한국산업단지공단	'26.5~6월	총 보조금의 70% 이내
↓			
⑨ 감축설비 설치	수행기관	'26.5~11월	공급기업(설비업체)와 계약 후 감축설비 설치
↓			
⑩ 보조금(잔금) 신청·지급	수행기관↔ 한국산업단지공단	~'26.11월	감축설비 설치 현장확인 보조금 잔금(30%) 지급
↓			
⑪ 감축설비 관리	수행기관	계속	취득재산 관리대장 작성 등
↓			
⑫ 온실가스 감축량 관리	수행기관	'26.11월	현장점검 (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용역사)
↓			
⑬ 사후관리 사업성과 활용	수행기관, 한국산업단지공단	계속	감축실적보고서 제출(3년)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

* 상기 일정 및 횟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시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(www.kicox.or.kr)를 통해 공지

VII 세부일정

가. 수행기관 사업 신청

- 모집기간: 2026. 2. 11.(수) ~ 2026. 3. 31.(화), 49일간

* 접수된 순서에 따라 선정평가 절차를 진행하며, 지원예산 소진시 공고 종료

- 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온실가스·에너지 감축설비 지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사업 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이하 ‘e나라도움’이라 함)으로 제출

- 세부관리지침 별표3의 서류를 제출 (관련서식 별지서식 제1호)

*** e나라도움 접수 후 산단공 담당자 메일로도 제출 必**

** 사업계획서 내 정부지원금 집행계획은 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(기획재정부공고 제 2021-210호)’ 및 ‘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(기획재정부공고 제2021-87호)’ [별표1]에 따른 보조세목별로 작성

- 신청 수행기관은 신청하는 감축설비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비교 견적서 제출. 단,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(보조사업 관련 계약)에 의거 2천만원이상의 용역 및 구매를 나라장터를 통해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(비교견적서 제출 필요 없음)

*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,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 등 제품의 독자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제출

- 신청 수행기관은 공단에서 추후 선정할 전문용역사에게 ‘온실가스·에너지 감축량 산정 및 검증’을 위한 각종 자료제출에 협조할 것

*** 사업지원비 중 일부 지원금액을 추후 선정 전문용역사에 집행배정할 예정(추후 안내)**

- 공단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, 제출자료의 사실부합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,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 보완, 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

*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업체가 기한 내에 관련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

나. 수행기관 선정·통보 및 협약체결

-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,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 평가점수의 상위 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

점 수	70점 이상	70점 미만
지원여부	예산한도 내 지원	지원불가

- 선정된 수행기관은 통지 후 15일 이내에 [별지 제4호 서식]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단과 협약 체결
- 공단은 협약시 위원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행기관의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일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
-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기준은 [별표 2] 참조

다. 착수신고

- 선정된 수행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[별지 제7호 서식]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
- 수행기관은 정산처리 및 책무 등에 관해 설비 제조업체, 시공업체와 별도의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공단에 사본을 제출
- 수행기관은 자기부담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자하고, 자기부담금 내 세부 내역은 설비 제조업체, 시공업체 계약 등에 의해 결정

라. 보조금(선급금) 지급

<사업비 지급방법>

- 선급금(70%) 지급 : 협약→착수보고 후
 - * 착수보고시 민간부담금(현금)의 先입금 / 국고보조금의 40%이상
- 잔금(30%) 지급 : 설비설치완료 후

- 공단은 수행기관의 착수신고서 접수 후 총 보조금의 70% 이내에서 수행기관에게 보조금(선급금)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수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 신청서를 작성·제출해야함

※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(선급금 신청시)

① e나라도움 로그인 → (공단에서 세부과제 수행기관 선정 완료 처리 후) → ② 사업수행관리 → ③ 신청관리 → ④ 교부관리 → ⑤ 교부신청 →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'신청서 작성'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

- 보조금(선급금) 신청 시 자부담금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 (통장내역 사본 등)

마. 상황보고

-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해 수행기관에게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
-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행기관은 [별지 제8호 서식]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

바. 설치완료 및 보조금(잔금) 신청

-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종료전 30일이내에 시공완료 후 [별지 제12호 서식]에 따른 보조금(잔금) 지급신청서 및 취득재산관리대장[별지 17, 18호] 및 명판부착[별지19호]을 공단에 제출
- 수행기관은 보조금(잔금) 지급신청 시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작성·제출해야함
- 공단은 보조금(잔금)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, 설비 시공 등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적정한 경우 보조금 지급
- 기 지급된 선급금이 있는 경우는 보조금 중 선급금을 제외하고 지급

※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(잔금신청시)

① e나라도움 로그인 → ② 사업수행관리 → ③ 신청관리 → ④ 교부관리 → ⑤ 교부신청 →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'신청서 작성'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

사. 사업비 정산

-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[별지 제16호 서식]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정산자료를 공단으로 제출해야 함
 - * 사업비 정산보고서는 '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(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-227호)'의 [별표1]에 따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
- 공단은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하며, 적극 협조하여야 함.
- 정산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은 정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이 지정한 계좌(보조금 입·출금계좌)로 반납하여야 함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조금액이 총 1억원 이상인 경우 수행기관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

아.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 활용

- 수행기관은 설비 및 서비스의 유지·보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, 설치 완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[별지 제21호 서식]에 따른 온실가스·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설치된 설비에 대해 온실가스·에너지 감축 실적을 알 수 있는 데이터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매년 4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
- 수행기관이 성과활용기간(온실가스·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 제출 의무기간 3년)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 공단은 사안에 따라 정부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, 부가적으로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- 수행기관에 설치된 설비 및 부대시설에 대해 5년 동안 공단이 요청할 경우, 제3의 기관(기업)*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

* 설치된 설비등의 사용을 희망하는 주변 기업, 기관 등(공단 선정)

** 설비 사용에 대한 대가는 각 기업(기관)이 협의해야 함

○ (신청기간) 2026. 2. 11.(수) ~ 2026. 3. 31.(화), 49일간

○ (사업신청) 반드시 e나라도움으로 신청 및 서류제출

* 본 지원사업 신청업체는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 회원가입 필수(공인인증서 필요)

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절차 (e나라도움 고객센터: 1670-9595)
 ① e나라도움 로그인 → ② 사업수행관리 → ③ 신청관리 → ④ 사업신청관리 →
 ⑤ 공모현황 → ⑥ 공모명 : 2025년 생태산업개발사업(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사업) 선택 후 '신청서 작성'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

**** e나라도움 사업 신청 완료 후 산단공 담당자 메일로도 제출 必 (hsjj@kicox.or.kr)**

○ (서류제출) e나라도움으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제반서류를 제출
 - e나라도움 사업신청은 기한 내 완료되어야 함

*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[별첨2] 서식 및 양식 참조

 e나라도움 신청서 제출은 신청마감일 18시 정각까지 '제출' 처리된 건에 한함

○ 문의처

- 사업문의 : 070-8895-7188 (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e효율화팀 황수지 대리)
- e나라도움 사용문의(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등) : 1670-9595
- 조달청 나라장터 사용문의 : 1588-0800

IX 사업 신청 유의사항

- 설비의 감축실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계측기 등을 필수로 설치하여야 함(사업비에 계측기 비용을 포함할 수 있음)
- 사업의 신청은 2개 이상 기업이 공동활용하는 설비 및 서비스에 대해 신청
(대표수행기관과 대표가 동일인이거나 직계존비속, 계열사 등인 관계사는 공동활용 기업숫자에서 제외)
- 2개 이상 기업으로 사업선정 후 수행기관간의 관계가 관계사로 인정될 경우,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
- 사업신청자격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(공장등록 완료된 기업) 중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한함
- *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(공고일 이후) 제출
- 사업의 선정 전 신청업체와 설비 제조업체, 시공업체간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은 당 사업에서 인정하지 않으며, 향후 사업비 정산 시 동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
- 계약별 건적은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,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증빙서류(특허증, 기타 증빙서류 등)를 포함한 사유서 제출
- *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을 의뢰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을 이용하여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나라장터 홈페이지 가격 등 설비 가격정보 제출(비교견적서 제출 필요 없음)
- 수행기관, 설비 제조업체, 시공업체는 관련 법령, 규정 및 사업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

- 사업계획서 제출 후 필요시 평가전 공단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 - * 업체가 제출한 설비 위치 도면을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, 수량, 위치 등 제출도면이 현장여건과 다를 경우 추가 현장조사 없이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추진
- e나라도움 신청서 제출은 신청마감일 18시까지 ‘제출’ 처리된 건에 한하므로, 시스템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제출 요망
-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·관리하여야 하고, 사업비는 동 통장이나 계정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

X **관련법령**

- 지원근거
 -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(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)
- 관련규정
 -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세부관리지침
 -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
 -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

XI 기타사항

- 기타 사항은 「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(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) 세부관리지침」을 따름
- 제출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, 일체 반환하지 않음.
-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수행기관에게 있음
- 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(조달청 계약의뢰 등)

※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(보조사업 관련 계약)

-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,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
 - 2.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
 - 3. 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
-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 - 1.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- 2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공사(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)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- 3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- 4.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
첨부 1. 세부관리지침 1부

첨부 2. 서식 및 양식 1부(사업계획신청서식). 끝.

[별표 1] 지원사업 대상설비 및 서비스(예시)

공동활용 설비	지원범위
보일러	열원의 손실을 억제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열원 생산 설비 - 설치 후 7년이 경과한 보일러의 교체, 교체 후 설비는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”제31조의6에 따른 검사 대상설비에 한함
증기 재압축장치	저압의 증기를 압축하여 고압의 증기로 이용하기 위한 설비
펌프 동력설비	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에 따라 인증 받은 설비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
폐열회수 이용설비	폐열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- 열풍, 온수, 증기,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
인버터 제어형 압축기	인버터 제어에 의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
고효율 인버터	부하에 따라 전압 및 주파수를 가변하여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는 설비 - 설치용량(kW)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인 경우,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
용해로	가스 또는 유류를 열원으로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 중, 에너지절감 효과가 5%이상 가능한 설비 - Submarine 또는 Deep Throat 방식이며, 축열 구조를 갖춘 것 - 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용해 장치 - 전기유도현상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용해하는 장치
응축수 회수설비	응축수를 회수하여 보일러급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
사출성형기	사출성형공정에 필요한 압력, 에너지 출력, 보압(압력유지) 설비 - 펌프 회전수 조절 통해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서보모터 제어형 사출성형기 - 인덕션히터 적용 사출성형기
터보냉동기	응축기, 부속냉매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사이클을 구성하는 설비 - 2단 압축방식 등 기존 설비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구조의 설비
변압기	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”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에 따라 공단에 신고를 완료한 표준소비효율 이상의 변압기 - 유입 일단접지변압기는 98.3%이상의 설비 - 유입 3상 변압기는 97.7%이상의 설비 - 몰드 3상 변압기는 97.8%이상의 설비
스크류 냉동기	응축기, 부속냉매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사이클을 구성하는 설비 - KS B 6275에 따라 측정한 스크류 냉동기의 냉동능력이 1,512,000kcal/h{1,758.1kW, 500USRT} 이하의 설비
Blower	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에 따라 인증 받은 설비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- 용수 등 유체이동, 시멘트 등 분체이동, 집진, 건조, 제습 등 현장에 적용 - 최적의 가변속도 제어(VFD) 기술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
폐유 재생설비	집진, 정제공정의 일체화를 통해 폐유 및 오일미스트 재생이 가능한 설비 - 절삭유 사용량·폐절삭유 발생량 절감 가능 설비 - 작업장 공해요인(오일미스트, 분진, 미세먼지 등)을 동시에 차단 가능 설비

* 상기 작성된 리스트는 참고 사항으로 이 외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설비 또는 서비스, 공동활용 인프라 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 모델이면 본 사업 지원 가능

** 공동 활용의 기준은 수요기업 2개사 이상이 사용하는 형태를 뜻함

[별표 2]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기준

1. 평가방법

-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기관이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평가

2. 사업계획서 평가기준

평 가 항 목		평 가 내 용	배점
사업 계획	○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	· 추진방법·일정의 구체성 · 설비 적정성, 적용의 타당성	5
	○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	· 목표 설정의 적정성, 달성 가능성 · 목표 달성 정도 측정의 명확성 · 사업 목적의 적합성	15
	○ 사업비 적정성	· 사업비 산정·구성의 적정성 · 설비 비용의 적정성	10
수행 능력	○ 사업의 전문성 및 구성의 적정성	· 전문기업의 구성 · 전문성 및 보유기술력 ·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등	10
사업 효과	○ 산출근거의 타당성	· 온실가스 감축, 에너지 절감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	10
	○ 온실가스 감축효과	·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량 · 외부사업 등록 계획	30
	○ 고용창출 효과	·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	5
	○ 사업효과 파급성	· 다수 기업 참여 및 동일 업종· 타업종으로 확대 적용 가능성	15
가점	○ 가점 부여	· 적용기업 4개사 이상	5
		· 생태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	2

○ 참고. 전국 생태산업단지 리스트(105개)

순번	시·도	대상단지	단지수
1	경기	반월국가, 시화국가, 아산국가포승지구, 평택송탄일반, 양주검준일반, 안성1·2·3일반, 포천양문일반, 동두천1일반, 반월도금일반	11
2	충북	오창과학, 청주일반, 광혜원일반, 증평일반, 금왕일반, 충주일반, 충주첨단, 제천일반, 오송생명과학, 옥산일반	10
3	충남	아산(고대, 부곡)국가, 현대제철일반, 대산일반, 서산오토밸리, 탕정디스플레이시티, 인주일반, 천안제2·3일반, 백석농공, 아산테크노밸리, 서산테크노밸리	11
4	경북	포항철강, 구미국가, 다산일반, 외동일반, 왜관일반, 포항국가, 두류일반, 학상일반, 천북일반	9
5	대구	성서1·2·3·4일반, 달성1·2일반, 염색일반, 서대구일반, 검단일반, 제3공업, 성서5일반, 구지농공	12
6	울산	울산미포국가, 온산국가, 매곡1일반, 길천일반, 신일반, 하이테크밸리일반, 모듈화일반, 달천농공, 상북농공, 두서농공	10
7	부산	명지녹산국가, 신호일반, 신평장림일반, 부산과학일반, 정관일반, 장안일반, 화전일반	7
8	전북	군산국가, 군산2국가, 익산국가, 익산2일반, 완주일반, 정읍1·2·3일반, 전주1·2일반, 군산일반, 정읍첨단과학	12
9	전남	여수국가, 광양국가, 대불국가, 화양농공, 오천일반, 동강농공, 풍양농공, 초남·익신일반, 신금일반	9
10	인천	남동국가, 한국수출산업국가, 검단일반, 인천일반, 인천기계일반, 인천서부일반	6
11	광주	광주첨단과학국가, 하남일반, 본촌일반, 소촌일반, 평동일반	5
12	대전	대덕연구개발특구Ⅱ지구(대덕테크노밸리), 대덕연구개발특구Ⅲ지구(대덕산업단지), 대전일반	3
합 계		105개	

[별표 3] 위반 시 제재사항

1. 제재대상자

-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을 위반한 수행기관으로서 해당 기업, 대표자 및 보조금 사용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

2. 조치기준

구 분	주요 위반사항	조치기준
보조금 지급 이전	○ 설치계획, 보조금 신청서류 등의 검토과정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	사업참여제한 3년 (사업자명 공표 검토)
	○ 수혜자 및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	사업참여제한 3년
	○ 2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 관계가 관계사일 경우	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
	○ 공단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	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
	○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설비시공이 이루어졌을 경우(사전에 계획변경 승인이 없었던 경우에 한함)	지원조건 변경 (지원대상 전부 또는 일부 취소)
보조금 지급 이후 (감축활동 유효기간 3년)	○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설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	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
	○ 2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 관계가 관계사일 경우	사업참여제한 2년 보조금의 50% 환수
	○ 지원설비를 당초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	사업참여제한 3년 보조금의 50% 환수
	○ 지원설비를 당초계획(목적)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거나, 별도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였을 경우	사업참여제한 5년 보조금 전액 환수
	○ 부도, 사업장 폐쇄 등으로 감축설비 운용이 어려운 경우	설비 적정가격 평가 후 유상 또는 무상 양도
공 통	○ 공단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	사업참여제한 3년
	○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	사업참여제한 3년 보조금 전액 환수 사업자명 공표

[별표 4] 감축설비 설치 후 유의사항

1. 보증보험

- 수행기관은 선금신청 시 선급금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여 공단으로 제출
 - *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
- 설치확인 요청 시 수행기관은 설비 제조업체(또는 시공업체)가 발행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 보증서 사본 1부를 제출
 - * 하자이행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 비용을 합한 금액의 10%. 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B+ 이상인 경우는 5%(보증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)
- 주요 설비 제조업체와 시공업체는 설비 소유주(수행기관)에게 품질보증서에 명시된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
- 설비 시공 완료 후 공단의 현장 확인 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보완 기간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현장 확인 재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해야함
 - * 예) 1차 현장확인 신청시 하자보증기간 : '26.6.15~'29.6.14
1차 현장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에 대한 조치기간이 2개월이 소요된 경우의 하자 보증기간 : '26.8.15~'29.8.14

2. 사업관리

-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주요제품 등의 내용 변경 및 보조금 사용계획의 변경*은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
 - * 예)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, 보조비목 간의 전용,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 예산의 30%를 초과하는 보조세목 간의 전용 등
- 사업 승인일로부터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감축설비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, 부득이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사업종료일 이전까지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.
- 사업의 보조금 지원 외에 수행기관의 설비 제조업체, 시공업체 선정, 시공제품과 시공의 안전과 신뢰성, 기대효과 미흡,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·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공단과 무관하며 민·형사상의 책임이 없음
- 공단은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만을 지원하며, 수행기관과 설비 제조업체, 시공업체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
- 선정된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인허가사항(개발제한구역, 그린벨트 등)으로 인한 설치 불가나 민원사항(소음발생, 조망권 침해 등)이 발생하여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

3. 사후관리

- 수행기관은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3년 동안 연 1회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, 그 결과를 [별지 제21호 감축실적보고서]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
- 공단은 수행기관의 사후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